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감정의뢰인	춘천지방법원
건명	김계희 외 1명 소유물건 (2024타경54675)
평가서번호	삼일 142410-31-00039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
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
(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감정평가법인 삼일

강원지사 T:033-432-9022 F:033-432-9023

(부동산)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이 학 서

이 학 서



(주)감정평가법인 삼일

강원지사장

김 종 진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사억칠천이백이십만육천원정(₩472,206,000.-)				
의뢰인	춘천지방법원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경매3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계희 외 1명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4. 10. 15.	2024. 10. 14. ~2024. 10. 15.	2024. 10. 16.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별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원)
토지	429	토지	429	494,000	211,926,000
건물	532.25	건물	532.25	480,000	255,480,000
제시외건물	(16)	건물	16	-	4,800,000
		< 이 하 여 백 >			
합계					₩472,206,00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김종진

김종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의 개요

1. 평가목적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소재 "원통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춘천지방법원의 경매목적에 위한 감정평가임.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으며, 별도의 조건은 없음.

3. 기준시점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4년 10월 15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현장조사일자는 2024년 10월 14일에서 2024년 10월 15일 까지 임.

4. 감정평가방법

가. 개요

본건은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물건의 특성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 이론에 의거 감정평가 3방식(비교방식, 원가방식 및 수익방식) 중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토지

본건 토지의 평가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다른방식<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다. 건물 및 구축물

본건 건물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부대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음.

5. 기타 참고사항

- *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건물 일부가 폐문부재 하여, 외부관찰 및 공부를 기준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 바람.
- * 본건 토지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이동식 컨테이너가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하여 이에 구매없이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 바람.
- * 본건 건물에 부합된 계단, 펜스 등은 건물가격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대상부동산의 개황

1. 토지의 개황

가.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소재 "원통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나.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거리,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에 비추어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다. 형태 및 이용상황

기호1: 가장형의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임.

라. 인접 도로상태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8m의 포장도로와 접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마. 토지이용계획사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수구역(배수 분구)<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3처리분구)<하수도법>

바. 제시 목록외의 물건

-

사. 공부와의 차이

-

아. 임대관계

미상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건물의 개황

가. 건물의 구조

기호	항목	내 용		
2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732-1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스라브지붕	사용승인	1994.11.15 증축2003.10.17
	외벽	인테리어마감 등		
	외벽	스톤스프레이,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알루미늄샷시등임.		

나. 이용상황

기호(2): 상업용 건축물임.

다. 부대설비 상황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부합물 및 종물관계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고 바람.

마. 공부와의 차이

-

바. 임대관계

미상임.

사. 기타 참고사항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Ⅲ. 토지가격 산출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기준시점일까지의 지가변동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하고 그밖의 요인 등 제반 가치형성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함.

2. 대상 토지의 개요

[2024.01.01]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개별지가 (원/㎡)
1	원통리	732-11	대	429.0	상업용	2종 일주	소로 한면	가장형 평지	206,400
토지 연면적(㎡)				429.0					
특기사항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비교표준지의 선정

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기준일 : 2024.01.01)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711	원통리 732-10	대	183.0	단독 주택	2종 일주	소로 한면	가장형 완경사	173,500
특기사항		* -.						

나. 선정 사유

본건 비교표준지의 선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실제 이용상황, 지목 및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인근지역에 소재 하는 상기 표준지를 선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시점수정

본건 평가에 적용할 시점수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함.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누계(%) (2024.01.01 ~ 2024.10.15)
주거지역	2024.01.01 ~ 2024.08.31 : 0.398 2024.08.01 ~ 2024.08.31 : 0.077 $(1 + 0.00398) * (1 + 0.00077 * 45/31)$ ≒ 1.00510

※ 미고시된 지가변동률은, 직전월의 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5. 지역요인 비교

본건 토지는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 위치하여 제반 지역특성을 공유하는 바, 지역요인은 유사함. (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개별요인

가. 개별요인의 비교항목

(상업지대) 개별요인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상업지역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 조건	고객의 유동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 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 맹지 여부 등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여부 등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여부 등
행정 조건	행정상의 규제 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용적제한, 고도제한 등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개별요인의 비교치의 결정

기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자연	획지 조건	행정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특기사항
1	1.00	1.00	1.00	1.20	1.00	1.00	1.200	
비교치 결정의견		• 본건은 표준지대비 획지조건(면적, 형상 등)에서 우세함.						

7. 그 밖의 요인의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등에 근거하여, 평가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반영하고,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내 유사토지의 정상적인 가격수준과 표준지 공시지가와의 가격격차를 보정하여 평가액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나. 관련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건설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28) 및 대법원 판례(01두3808, 2003.02.28, 00두10106, 2002.03.29) 등에서 인정되는 점을 참작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그 밖의 요인 격차율 산정 방법

거래사례 등을 기준으로 한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기준시점 현재의 비교표준지 가격을 비교하여 격차율을 산정한 후, 기타요인 보정치를 결정함.

거래사례 등의 단가 x 시점수정치 x 지역요인비교치 x 개별요인비교치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치

라. 그 밖의 요인 격차율의 산정

1) 거래사례 등의 선정

평가대상 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지구 등 공법상 제한사항, 실제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하며 거래에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선정함.(각 표준지별 거래사례 등의 선정 내역은 하기 참조)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수집된 가격자료

가) 인근 평가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협회 전례]

기호	기준시점	소재지	용도지역	토지	면적 (m ²)	단가 (원/m ²)	개별지가 (원/m ²)	비고
	평가목적		이용상황	건물			격차율	
1	2023.04.12	원통리 ***	2종 일주	대	-	335,000	180,200	2023년 지가
	시가참고		대	-	-	-	1.86	
	의견	-						
2	2024.02.27	원통리 ***	2종 일주	대	-	376,825	189,600	2021년 지가
	실거래		대	-	-	-	1.99	
	의견	-						

3) 거래사례 등 기준 비교표준지의 가격

비교표준지	비교사례		㉠ 시점수정	㉡ 지역 요인	㉢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m ²)	비고
	기호	단가(원/ m ²)					
711	1	335,000	1.00681	1.00	1.224	412,83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시점수정

기호	기간	구 분	시점수정치	변동률
1	2023.04.12 ~ 2024.10.15	주거지역	1.00681	0.681%

㉡ 지역요인 비교

거래사례 등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

㉢ 개별요인 비교

비교표준지와 거래사례 등의 개별요인 비교치는 아래와 같음.

비교 표준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자연	획지 조건	행정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누계치	비교 의견
711	1.00	1.20	1.20	0.85	1.00	1.00	1.224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환경조건(주위환경 등)에서 우세하나, 획지조건(면적, 형상 등)에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기준시점 현재 비교표준지의 가격

비교표준지		㉠ 시점수정	㉡ 지역 요인	㉢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비고
기호	단가(원/㎡)					
711	173,500	1.00510	-	-	174,385	

5) 격차율의 산정

거래사례 등	비교표준지	㉠ 거래사례 등 기준표준지가격 (원/㎡)	㉡ 기준시점 현재 표준지 가격 (원/㎡)	격차율 (㉠/㉡)
1	711	412,832	174,385	2.36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마. 그 밖의 요인 격차율의 결정

1) 용도별 낙찰가율 통계

[출처 : 대법원 경매정보]

구 분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비 고
	낙찰율	낙찰가율	낙찰율	낙찰가율	
최근 1년간	32.9%	55.4%	27.9%	69.2%	

2)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비교 표준지	보정치	결정의견
711	2.36	비교표준지와 거래사례 등과의 격차율 및 제반 가격자료, 인근 지가 수준 등을 종합참작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좌기와 같이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8. 토지가격의 결정

가. 토지 적용단가의 결정

본건 토지의 평가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등을 종합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단가를 결정함.

기호	비교표준지(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밖 의 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비고
	일련번호	공시지가							
1	711	173,500	1.00510	1.00	1.200	2.36	493,858	494,000	

나. 토지가격의 결정

기호	소재지	지번	사정면적 (㎡)	적용단가 (원/㎡)	시산가액(원)	비고
1	원통리	732-11	429.0	494,000	211,926,000	
토지 감정평가액 계					211,926,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건물가격 산출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대상 건물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함.

2. 대상 건물의 개요

기호	층	구조 (현황)	용도 (현황)	제시면적 (㎡)	사정면적 (㎡)	사용 승인일	특기사항
2	1층	철근 콘크리트조	근린 생활시설	178.550	178.550	1994.11.15	-
2	2층	철근 콘크리트조	근린 생활시설	176.850	176.850	1994.11.15	-
2	3층	철근 콘크리트조	근린 생활시설	176.850	176.850	1994.11.15 증축 2003.10.17	-
건물 연면적(㎡)				532.250	532.25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건축물 표준단가 참고자료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 2022

분류번호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 (원/m ²)	내용연수
3-1-5-9	점포및 상가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3	1,262,000	50 (45~5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표준단가의 결정

건물의 적용 표준단가는 본건 건물의 규모, 구조, 사용자재의 품질 및 시공방법 등을 기준으로 상기 예시된 건물신축단가 및 유사평가선례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였음.

기호	층	구조 (현황)	용도 (현황)	표준단가(원/㎡)	비 고
2	1층	철근 콘크리트조	근린 생활시설	1,200,000	
2	2층	철근 콘크리트조	근린 생활시설	1,200,000	
2	3층	철근 콘크리트조	근린 생활시설	1,200,000	

5. 보정단가

기호	난방	위생및 급배수	소화 설비	승강기 설비	전기 설비	기타 설비	소 계	비 고
2	-	0	0	-	-	-	-	

※ 본건 건물의 설비상황, 상태 등을 종합감안하여 표준단가에 포함하여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적용 재조달원가[(표준단가 + 보정단가) X 적용률]

기호	층	구조 (현황)	용도 (설계)	표준단가 (원/m ²)	보정단가 (원/m ²)	적용률	재조달 원가 (원/m ²)
2	1층	철근 콘크리트조	근린 생활시설	1,200,000	-	100%	1,200,000
2	2층	철근 콘크리트조	근린 생활시설	1,200,000	-	100%	1,200,000
2	3층	철근 콘크리트조	근린 생활시설	1,200,000	-	100%	1,2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7. 적용단가의 산정(감가수정)

가. 감가수정의 결정기준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본건 건물에 적합한 정액법을 적용하되, 본건 건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상태, 증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를 병행하였음.

나. 감가수정액 산출 및 적용단가

기호	층	사용승인	제조달 원가 (원/m ²)	내용 연수	실제 (유효) 경과 연수	잔존 연수	감가 수정액 (원/m ²)	적용단가 (원/m ²)
2	1층	1994.11.15	1,200,000	50	30	20	720,000	480,000
2	2층	1994.11.15	1,200,000	50	30	20	720,000	480,000
2	3층	1994.11.15 2003.10.17	1,200,000	50	30	20	720,000	480,000
비 고		* 관찰감가 적용하였음.						

※ 감가수정액 = 제조달원가 × [실제(유효)경과연수/내용연수]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8. 건물가격의 결정

기호	층	용도 (현황)	사정면적 (m ²)	적용단가 (원/m ²)	시산가액(원)	비 고
2	1층	근린 생활시설	178.550	480,000	85,704,000	-
2	2층	근린 생활시설	176.850	480,000	84,888,000	-
2	3층	근린 생활시설	176.850	480,000	84,888,000	관찰감가
건물 감정평가액 계					255,48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V.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1. 산출 시산가액

구분	대상물건	면적(m ²)	단가 (원/m ²)	시산가액 (원)	비 고
토지	기호 1	429.0	-	211,926,000	
건물	기호 2	532.250	-	255,480,000	
제시외	기호 ㄱ	16.00	-	4,800,000	
합 계				472,206,000	

2. 거래사례비교법 등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사례단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면적	감정평가액
1	376,825	1.00	1.00490	1.00	1.368	518,023	429.00	222,231,667
2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가액을 적용함						532.25	255,480,000
제시외 ㄱ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가액을 적용함						16.0	4,800,000
합 계								482,511,667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정상적인 거래사례로서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않음. 1.00

* 주거지역 2024.02.27 ~ 2024.10.15 1.00490

기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자연	획지 조건	행정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특기사항
1	1.00	1.20	1.20	0.95	1.00	1.00	1.368	
비교치 결정의견		• 사례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환경조건(주위환경 등)에서 우세하나, 획지조건(면적, 형상 등)에서 열세함.						

3. 감정평가액의 결정

472,206,000 원

4.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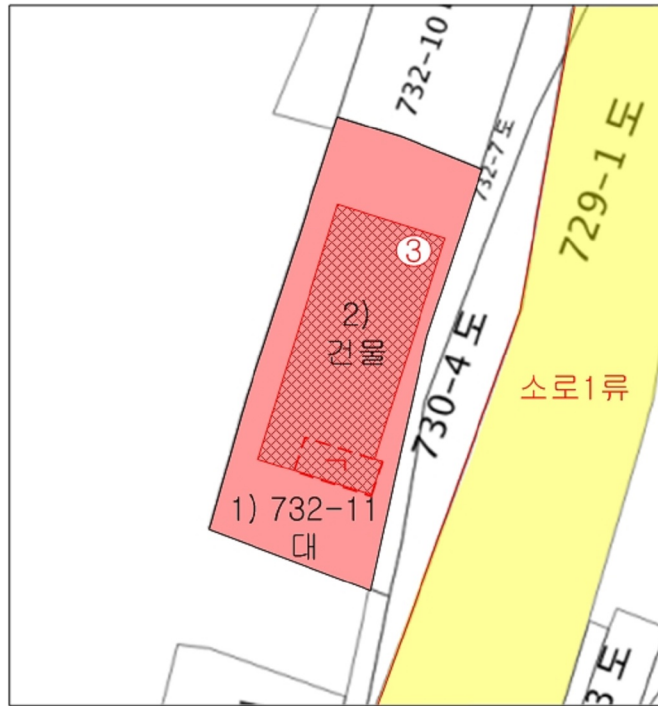
상기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공시지가기준법 및 원가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은 거래사례비교법 등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지지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공시지가 기준법 및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토지·건물)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용 도	용도지역 구 조	면 적(㎡)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강원 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동리	732-11	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429	429	494,000	211,926,000	
2	강원 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동리	732-11	근린생활 시설	철근 콘크리트조 콘크리트 스라브지붕 3층					
	[도로명주소] 강원 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동로147번길 5			1층	178.55	178.55	480,000	85,704,000	1,200,000 × 20/50
				2층	176.85	176.85	480,000	84,888,000	1,200,000 × 20/50
				3층	176.85	176.85	480,000	84,888,000	1,200,000 × 20/50 관찰감가
	<제시외건물>								
ㄱ	동소	732-11	계단실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6)	16	-	4,800,000	
	합 계							₩472,206,000.-	
				이	하	여	백	-	

지적 및 건물개황도

No Scale



범례



1층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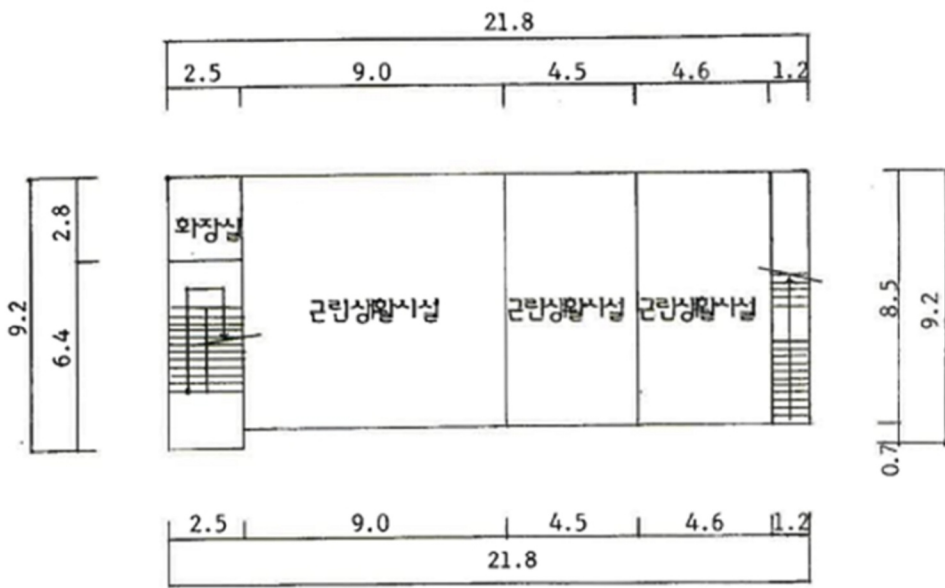
3층이상



제시외건물

내 부 구조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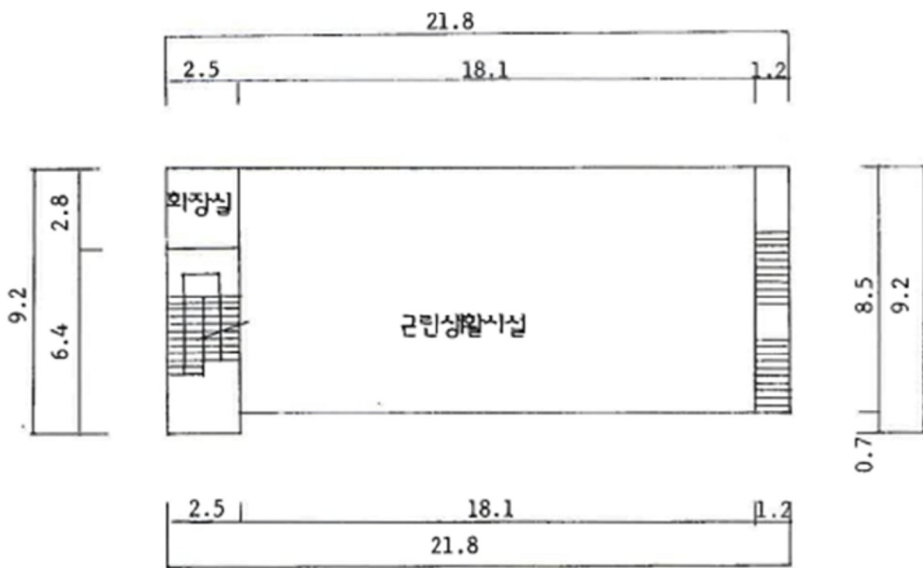
No Scale



기호 2 건물 1층 178.55m²

내 부 구조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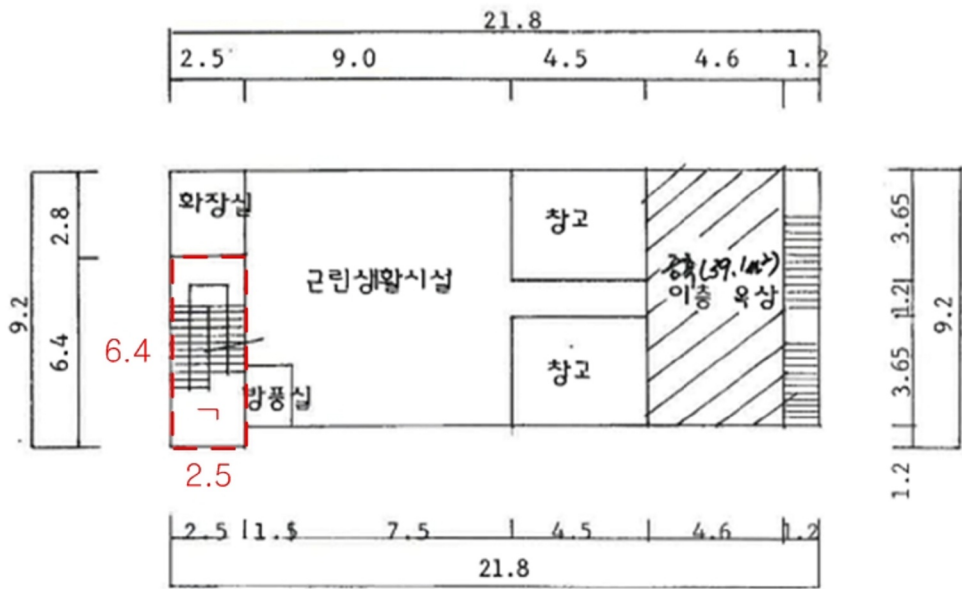
No Scale



기호 2 건물 2층 176.85m²

내 부 구조 도

No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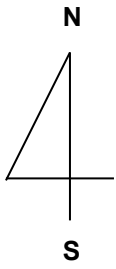


기호 2 건물 2층 176.85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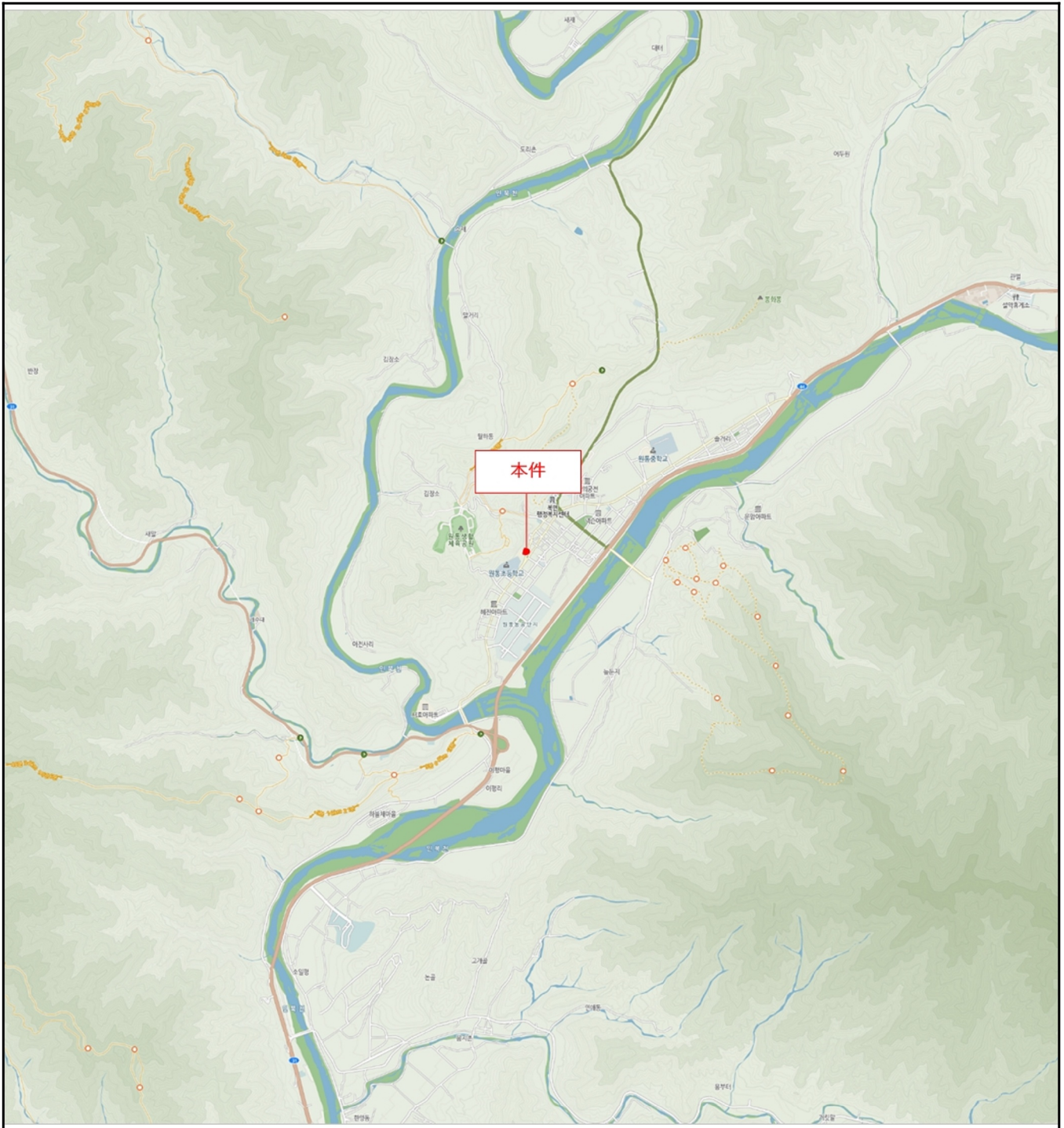
<제시외건물>

ㄱ : 계단실(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약16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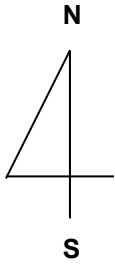
광역 위치도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732-11
-----	---------------------------



상 세 위 치 도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732-11
-----	---------------------------



표준지
#51810-711
용도지역: 2종일주
이용상황: 단독주택
대 183.0m²
173,500원/m²

本件
(1-2)

범례	 본 건	 표준지	 평가선례	 매매·방매
----	---	--	--	---

사 진 용 지



[본건전경]



[본건내부]

사 진 용 지



[이동식 컨테이너]



[제시외ㄱ]



(주)감정평가법인 삼일

문서번호 : 142410-31-00039

시행일자 : 2024. 10. 16.

수 신 : 춘천지방법원

참 조 : -

제 목 : 감정평가 회보

1. 우리 법인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문서 2024.10.02.자 귀 제 『 2024타경54675 』호로 의뢰하신 『 김계회 외 1명 소유 (2024타경54675) 』 건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감정평가하여 회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 임 : 1. 감정평가서 1부
2. 청구서 1부 끝.

(주)감정평가법인 삼일

강원지사장 김종진

수수료 청구서

감정평가서번호 : 삼일 142410-31-00039호

춘천지방법원 귀하

팔십육만구천원정 (₩869,000.-)

2024. 10. 02자 귀 제 『 2024타경54675 』호로 의뢰하신 『 김계회 외 1명 소유 (2024타경54675) 』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 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 『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에 의거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내역-

과목	금액	비고
(가) 평가수수료	531,542	● 평가수수료 ●
(나) 실비	여비	242,200
	물건조사비	10,000
	공부발급비	3,090
	기타실비	4,000
	특별용역비	-
소계	259,290	
합계(가 + 나, 천원미만 절사)	₩790,000	
부가가치세	₩79,000	
총계	₩869,000	
기납부착수금	-	
정산청구액	₩869,000	

□ 일반: $(200,000 + (472,206,000 - 50,000,000) \times 11/10,000) = 664,426$
 $664,426 \times 0.8 \approx 531,542$ ₩531,542
□ 평가수수료 : 531,542

※ 수수료 입금시 입금자 명의를 감정서번호(142410-31-00039)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SC제일은행

627-20-408143

예금주 : (주)감정평가법인 삼일

(주)감정평가법인 삼일 강원지사

TEL. 033-432-9022 FAX. 033-432-9023

[사업자등록번호 : 226-85-31155]